

의안번호	2205624
의 퇴 인	김문수 의원
회 답 일	2024.11.21.
추계번호	24C5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교부율의 보정)	(제1항)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경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법 제5조의3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삭제	(제1항)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제2항)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제3항)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의무규정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¹⁾	미첨부 근거 규정
1	법 제5조의3 및 부칙 제2조 삭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상향하고,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사유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제5조의3 및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비율이 법 제5조의3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97%와 3%로 변동됨

[표 1] 2026년까지 시행될 현행 및 개정안의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대한
재원 배분 비율 비교

	현 행(2026년까지 유효)	개 정 안
보통교부금	96.2%	97%
특별교부금	3.8%	3%

주: 현행 및 개정안의 비율은 각 교부금이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안 제4조제1항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무교육기관 교원인 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함. 다만, 현행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음 다음 연도의 내국세교부금이 증액되도록 그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법에 규정되는 것이므로 재정소요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표 2] 최근 3년간 교부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4년 본예산	23년 본예산	22년 최종예산
보통교부금	66,338,469	73,533,444	73,855,414
내국세분	64,179,277	72,013,526	70,795,195
교육세분	2,159,192	1,519,918	3,060,219
특별교부금	2,534,740	2,227,222	2,189,542
지역현안	600,426	668,167	656,863
재난안전관리	200,142	222,722	218,954
국가시책	1,200,852	1,336,333	1,313,725
디지털교육혁신	533,320	—	—
합 계	68,873,209	75,760,666	76,044,956

자료: 교육부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 개정안에 따른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배분 비율 조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규모는 변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24년 현재 법 제5조의3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이미 교부되어 집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시행 후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 분담 주체 및 추가 소요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교육부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24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교원 AI 교수학습 역량강화에 3,818억원, 방과후교육 활성화 지원에 1,515억원 등 총 5,333억원이 교부됨
 - － 시·도별로는 서울 87,369백만원, 부산 29,993백만원, 대구 24,991백만원, 인천 23,609백만원, 광주 17,431백만원 등의 교부가 실시됨
- ※ [참고자료] 2024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시·도별 교부액

[표 3] 2024년 특별교부금 중 디지털교육혁신 사업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
교원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교원연수 기반·질관리 체계 구축	48,900
	AIDT적용 교원 연수 지원	166,150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79,450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87,300
방과후 교육 활성화 지원	디지털새싹 운영	51,52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00,000
합 계		533,320

자료: 교육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별교부금 교부사유 중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될 것이나, 디지털 교육혁신이 ’23년부터 추진되어온 3대 교육개혁 과제인 점과 이미 ’24년 예산이 교부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시행 후 현행 ‘디지털 교육혁신’ 관련 예산에 대한 분담주체 및 추가재원 필요여부 등에 대한 예측에 한계가 있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 개정안 시행 이후 관련 사업이 배부 비율이 상향될 보통교부금 내에서 집행될지 또는 증액교부로 실시될지 여부, 사업조정 여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추진될 구체적 관련 사업 내역 및 예산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2024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시·도별 교부액

(단위:백만원)

시·도	디지털 교육혁신								합계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① 교원연수 기반·질 관리 체계 구축	② AIDT 적용 교원 연수 운영· 선도교사 그룹 연수 지원	③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④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소계	① 디지털새싹 (AI 기반 학습관리 및 AI· 디지털 교육지원)	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소계	
서울	7,009	24,275	8,262	8,783	48,329	7,760	31,280	39,040	87,369
부산	2,923	9,371	3,949	4,644	20,887	2,937	6,169	9,106	29,993
대구	2,480	7,909	3,043	3,752	17,184	2,375	5,432	7,807	24,991
인천	2,575	8,989	3,631	4,175	19,370	3,033	1,206	4,239	23,609
광주	1,735	5,267	2,352	2,844	12,198	1,644	3,589	5,233	17,431
대전	1,744	5,200	2,169	2,779	11,892	1,512	6,247	7,759	19,651
울산	1,175	3,838	1,684	2,416	9,113	1,264	3,981	5,245	14,358
세종	669	2,077	651	1,597	4,994	599	1,627	2,226	7,220
경기	11,584	42,301	18,098	15,621	87,604	14,639	2,865	17,504	105,108
강원	1,686	5,533	3,822	4,750	15,791	1,414	2,331	3,745	19,536
충북	1,687	5,649	3,099	3,822	14,257	1,614	8,987	10,601	24,858
충남	2,316	7,992	4,735	5,238	20,281	2,302	4,267	6,569	26,850
전북	2,200	7,061	4,910	5,490	19,661	1,815	5,234	7,049	26,710
전남	2,179	7,294	5,220	6,060	20,753	1,763	8,116	9,879	30,632
경북	2,744	9,255	6,205	6,458	24,662	2,472	2,122	4,594	29,256
경남	3,452	11,830	6,412	6,730	28,424	3,576	2,986	6,562	34,986
제주	742	2,309	1,208	2,141	6,400	781	3,561	4,342	10,742
계	48,900	166,150	79,450	87,300	381,800	51,500	100,000	151,500	533,300

자료: 교육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